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82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2200781)	2024. 6. 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2.20.) 상정
	한정애의원 (2201963)	2024. 7. 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1.)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2.20.) 상정
	서명옥의원 (2204566)	2024. 10. 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2. 20.) 상정
	김상훈의원 (2207587)	2025. 1. 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2. 20.) 상정
	김상욱의원 (2207624)	2025. 1. 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2. 20.) 상정
	이정문의원 (2207879)	2025. 2. 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2. 2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2. 20.)는 위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2. 25.)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 유에 추가함(안 제82조).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5조"를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6호나목·다목 또는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같은 항 제6호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4호, 제4호의2,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경우"를 "경우(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약물로"를 "약물의 영향으로"로,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 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 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제3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정

아

개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

<신 설>

<신 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 정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제44조제1항・제2항, <u>제4</u>
 <u>5조</u> 또는 제46조를 위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이르게 한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가 조제1항 · 제2항	
나. 제44조제1항·제2형 5조제1항(약물의 영 인하여 정상적으로	<u>항, 제4</u> 향으로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다) 또는 제2항	한정

다. • 라. (생 략)

- 4. (생략)
- 5.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2회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 다. (생 략) <신 설>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제6호나목·다목 또는 마목</u> -
6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
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신 설>

라. • 마. (생략)

7. ~ 10. (생략)

③ (생 략)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

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 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 사.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 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 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 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 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3의2. (생 략)

<u>제4호</u> ,
<u>제4호의2, 제7호</u>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신 설>

5. ~ 23. (생략)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 략)

<신 설>

4. <u>제45</u> 조제1항을-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 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 우

- 5. ~ 2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 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 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신 설>

<신 설>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u>자</u>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u>3년</u> 이하의 징역이 나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신 설>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 9. (생 략)

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 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정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벌칙)	<u>만한 상당한 이</u>	유가 있	<u> </u>	-람
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제154조(벌칙)1.・2. (현행과 같음)	으로서 제45조기	세2항에	따른	경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처한다.</u> 세154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찰공무원의 측	정에 응	-하지	아
<u>처한다.</u> 세154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니하는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
 l 154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1.·2. (현행과 같음)	<u> 처한다.</u>			
	제154조(벌칙)			
3. 제45조제1항을	1.•2. (현행과	같음)		
	3. <u>제45조제1항</u>	<u> </u>		
3의2. ~ 9. (현행과 같음)	3의2. ~ 9. (현	행과 같	유)	